

---

#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

---

2017. 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1 사업개요

## 1) 추진개요

## 가)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 나)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다) 사업기간 : 2015.10월부터 계속사업

## 라) 주요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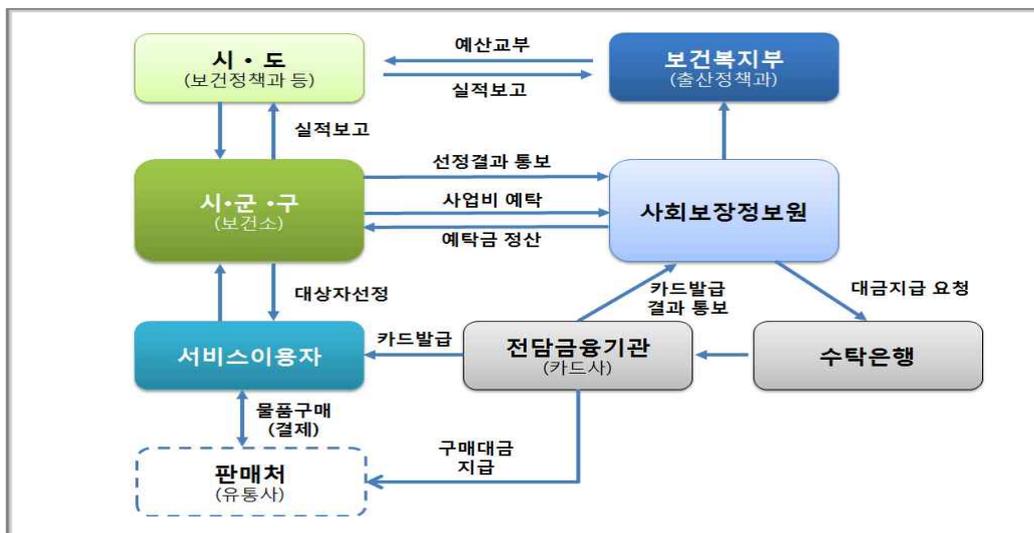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대신 공약으로 선정('12.12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국정과제(62-1)로 확정('13.5월)
  - \* 국정과제 62(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 (62-1)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14.1~11월)
  -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 종합평점 0.512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 '15.10.30. 사업 시행(기저귀 32천원, 조제분유 43천원 지원)
- '16년 지원단가 인상(기저귀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43천원→86천원)
- '17년 기저귀 지원 사업기간(생후 0~24개월) 확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족 양육아동 조제분유 지원 추가

2) 운영 방식

가) 개요

- (바우처 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로 '15.5월 출시
  -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는 이하 '국민행복카드'라 한다.
- (업무 위탁) 사회보장정보원에 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예산의 예탁, 정산 등 업무 위탁
  - 대상자별 바우처의 생성 및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지급·정산
  - 사업 예탁금의 입/출금 관리 및 정산
  - 사업운영체계인 '국가 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관리 및 개선
  - 전담금융기관(카드사), 수탁기관 등 외부기관과 연계업무 처리
- (용역위탁계약) 업무를 수행할 카드사를 다수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
  -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에 대한 업무
  - 유통점(공급자)로부터 바우처 결제 청구 시 비용 지급 업무
  - 바우처 결제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하고, 그 대금을 청구
  - 기타 카드 사용과 관련된 민원 처리 및 해결
  - 상위 업무에 대한 자동화 업무(국가 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나) 사업 추진 체계(사업예산 흐름도)



## 다) 사업 주체 및 역할

사업주체		역할
보건 복지부	출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li> <li>● 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li> <li>●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li> </ul>
	사회서비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li> </ul>
시·도	보건정책과 등 사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li> <li>●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li> </ul>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li> <li>●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li> </ul>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li> <li>●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li> <li>●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li> <li>●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li> </ul>
전담금융기관(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li> <li>●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li> <li>● 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li> </ul>
수탁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li> </ul>

2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운영안내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영아의 부모 등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작성</li> <li>• 구비서류 제출(소득확인 서류 등)</li> </ul>
↓		
접수 및 상담·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접수 및 등록</li> <li>• 자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수 확인</li> <li>-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li> <li>- (조제분유) 지원대상 질환 여부 확인</li> </ul> </li> </ul>
↓		
자격 판정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li> </ul>
↓		
결과 통보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 신청인) 등급 및 자격판정 결과 통지</li> <li>• (행복e음 → 전자바우처) 자격판정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li> </ul>
↓		
카드 신청	서비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li> <li>* BC·삼성·롯데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카드 이용 가능</li> </ul>
↓		
카드발급 및 배송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발급 및 배송</li> </ul>

## 가. 바우처 지원 대상

## 1) 지원 대상

## 가) 기본지원 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방사선 치료(Z51.0)
- ⑦ 항암제 치료(Z51.1)
-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나. 바우처 신청

1) 신청 개요

가)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 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동 연장)
  - \* '16.12.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나) 신청 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신청권자 :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바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함.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신청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함.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17.상반기 오픈 예정으로 신청가능 시기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보건소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바우처 신청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주민센터에서 접수되어 오는 신청사항을 지체없이 처리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보건소(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라) 신청 서류

- (기본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부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제3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 (기본 첨부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⑤ 조제분유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받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체보관 처리

마)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 처리방법

- 영아(0~24개월 미만) 양육 가구가 출생 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시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내용 등 안내
  - \* 동 사업 신청·접수 담당자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가 다를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상의 대상 영아 정보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가구원 정보·건강보험료·국민행복카드 보유정보 등을 조회·확인하고 관련 서비스정보 등을 입력하여 저장 처리
  - \* 별도 구비서류(각종 소득증빙자료, 조제분유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을 경우에는 스캔하여 등록
- 지원 신청사항에 대한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자격판정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임을 반드시 안내

※ 신청·접수 관련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보건소 사업담당자

주민센터에서의 지원 신청·접수 절차

처리 절차	업무 내용
① 신청대상자에게 사업개요 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출생 후 24개월 미만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함</li> </ul> </li> <li>•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소득) 3인가구 1,456천원, 4인가구 1,787천원 이하</li> </ul> </li> <li>-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li> </ul> </li> </ul> </li> <li>※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자격판정(지원결정)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지 할 예정임을 반드시 안내</li> </ul>
② 지원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접수</li> </ul>
③ 대상자 정보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에서 대상자 조회</li> </ul>
④ 가구원 정보 등 조회·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 서비스 찾기(Popup)’에서 가구원 정보 및 건강보험료 등 조회·확인 후 지원 서비스목록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택,</li> <li>•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 서비스 찾기(Popup) / 바우처 신청(Popup)’에서 대상자 및 서비스 정보, 소득·등급, 카드정보를 확인하여 입력</li> </ul>
⑤ 별도 구비서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구비서류(각종 소득증빙자료, 조제분유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TM 신청서 등)가 있을 경우에는 스캔하여 등록</li> </ul>
⑥ 접수 사항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입력사항 ‘저장’ 처리 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 처리 후 가구원 정보 또는 건강보험료 등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보건소담당자가 ‘신청취소’하여 다시 처리</li> </ul> </li> </ul>

## 다. 바우처 자격 결정

### 1) 바우처 자격 판정

#### 가) 자격 판정 원칙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 일반대상자→기초수급자 변경시 수급자증명서 제출로 지원가능(건강보험료 산출 불요)
-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 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① 출생아(영아)
- ②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 ③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 영아의 부모 및 영아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교도소 수감, 현역군인 복무, 공익요원의 훈련소 입소 등도 동일 처리

## 나) 건강보험료 산출

- 신청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를 참고하여 산출

### (참고) 사례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①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이 확인되는 경우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전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예외)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으로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4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②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맞벌이 부부 가구: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다른 가입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③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06%)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 \* 실제소득 증빙자료는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로 확인
- ④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신청일 기준 최근 수령 연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보험료율(3.06%)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당해 건강보험료 합산
- ⑤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⑥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추가서류 제출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06%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⑦ 미혼 자녀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미혼 자녀의 보험료는 '0원'인 것으로 산출

다)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기저귀 지원대상)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적합'판정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61,000	20,795	2,858	22,306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6인	2,448,000	75,834	71,834	76,490
7인	2,779,000	85,191	86,967	85,882
8인	3,109,000	96,146	102,553	97,367
9인	3,440,000	105,337	115,666	106,673
10인	3,770,000	115,615	130,141	117,05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3.06%(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기저귀 지원 대상 자격에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 라)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 \*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
  -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 2) 바우처 자격 결정

## 가)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및 소득 등 확인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전송
  - \* 예외지원(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판정결정등록 시 ‘시군구인정’으로 입력 후 전송

## 나) 자격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물발송, 이메일, SMS 중 택일하여 결과 통보
  - \* 신청시 첨부서류 확인으로 결정이 가능한 경우 당일 통보 가능
- 결정통지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출력 활용
  - ☞ [서식 제4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 [서식 제5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

## 다)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기저귀 지원대상)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적합’판정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61,000	20,795	2,858	22,306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6인	2,448,000	75,834	71,834	76,490
7인	2,779,000	85,191	86,967	85,882
8인	3,109,000	96,146	102,553	97,367
9인	3,440,000	105,337	115,666	106,673
10인	3,770,000	115,615	130,141	117,05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3.06%(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기저귀 지원 대상 자격에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 라) 지원시점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 지원결정 후에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예시) 영아 출생일이 '16.11.10일, 신청일이 '17.3.10일, 자격판정일이 '17.3.15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20개월분이 지급되며,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인 '17.3.16일 부터 20개월 동안('18.11.15일까지) 사용 가능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3) 이의신청

## 가) 신청개요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
- 신청권자 : 서비스 신청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 단축 고지 사유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유효기간은 '지원대상 판정 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이의신청 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도과 예방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 ☞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 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검토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 검토
  - 시·군·구청장은 검토 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4) 자격관리

가) 자격변동 및 확인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자격변동 사유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관리
- 기본지원 대상자(가, 나, 다 유형)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행복e음에 입력된 대상자별 전산 자료는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자동 이관됨
- 전출·입시 이미 지급된 3개월분의 바우처는 전출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잔여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부담
-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관리는 행복e음 시스템의 주기적인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필요(별도 통보예정)
- 예외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e음)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 적용시점
본인포기	이용자 본인 신청 시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영아의 사망	사망 사실 확인 시	자격자동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유효기간 도과	결정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	자격자동중지	지원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정수급	적발 확인시	관련법 또는 사업지침에 따라 조치*	변경 결정 익일부터
소득기준 초과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	연 1회 정도 (행복e음 자체점검)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확인조사 후 재판정결과 소득초과로 부적합 판정 시	변경 결정 익일부터

\* 소득 등의 지원신청 자격기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받게 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적립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 가능

- \*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강취·횡령하거나,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카드에 관한 위반사항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처벌 가능
- \* 지원된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 등의 지원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며,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추가 지원신청 등이 불가

다) 지원등급 변경(조제분유 추가지원)

-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경에 따라 조제분유 지원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된 지원유형은 변경결정 통지 후 익일부터 적용(바우처 생성)되며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 신청한 기저귀 바우처 종료일과 동일함
  - \* 기 생성된 바우처에 대한 소급적용 및 기 이용된 바우처에 대한 환수조치 없음
  - \* 조제분유 추가 신청시, 영아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현재 시점의 지역에서 조제분유 지원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가. 지원기간 및 금액

1) 지원기간

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예외적으로 2015.1월 출생아의 경우, 2017.1.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2) 지원대상별 지원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유형	64,000	예외지원 <sup>2)</sup> 라유형과 동일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50,000	예외지원 마유형과 동일
조제분유 추가 지원 <sup>1)</sup>	다유형	86,000	예외지원 바유형과 동일

1)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지원 신청 시

2)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사업으로 중위소득 40% 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 지원유형

## 3)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별 지원액 산정(표)

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라유형) - 영아 1인당 월 64천원 지원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 청 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64천원×24개월=1,536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22개월=1,408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21개월=1,344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20개월=1,28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9개월=1,216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8개월=1,152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7개월=1,088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6개월=1,024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5개월=960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4개월=896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3개월=832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2개월=768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1개월=704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0개월=640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9개월=576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8개월=512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7개월=448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6개월=384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5개월=320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4개월=256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3개월=192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2개월=128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개월=64

## 나)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마유형) - 영아 1인당 월 150천원 지원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

신 청 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150천원×24개월=3,600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22개월=3,30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21개월=3,150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20개월=3,00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9개월=2,850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8개월=2,700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7개월=2,55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6개월=2,400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5개월=2,250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4개월=2,100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3개월=1,950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2개월=1,800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1개월=1,650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0개월=1,500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9개월=1,350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8개월=1,200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7개월=1,050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6개월=900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5개월=750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4개월=600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3개월=450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2개월=300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개월=150

다)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바유형) - 기저귀 지원대상자에 대해 기저귀 외  
조제분유 지원 결정일 기준 기저귀 잔여 개월수 × 월 86천원 추가 지원

【잔여기간에 따른 조제분유 지원금액】

신 청 일	추가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86천원×24개월=2,064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22개월=1,892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21개월=1,806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20개월=1,72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9개월=1,634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8개월=1,548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7개월=1,462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6개월=1,376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5개월=1,290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4개월=1,204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3개월=1,118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2개월=1,032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1개월=946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0개월=860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9개월=774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8개월=688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7개월=602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6개월=516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5개월=430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4개월=344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3개월=258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2개월=172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개월=86

나. 바우처 지급(생성)

1) 바우처 지급방식

- (시기) 영아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에 따른 바우처 지급 시기】

지원기간	바우처 지급 시기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24개월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	1회차 지급 후 4개월째 날의 시작일	1회차 지급 후 7개월째 날의 시작	1회차 지급 후 10개월째 날의 시작	1회차 지급 후 13개월째 날의 시작	1회차 지급 후 16개월째 날의 시작	1회차 지급 후 19개월째 날의 시작	1회차 지급 후 22개월째 날의 시작
22개월								
21개월								
20개월								
19개월								
18개월								
17개월								
16개월								
15개월								
14개월								
13개월								
12개월								
11개월								
10개월								
9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 (생성액) 대상자별 월지원액 × 3개월분 만큼 생성되며 다음 바우처 생성 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이월됨
  -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1~2개월)는 월지원액 × 지원기간 만큼만 바우처 생성
- (지원유형(등급) 변경 대상자) 첫 바우처는 지원유형 변경결정일로부터 다음 바우처 생성일까지 남은 개월수 × 조제분유 추가지원액 만큼을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 다음 바우처 생성은 기저귀 지원액과 합산하여 동일한 시기에 지급
    - \* (예) 기저귀 24개월 지원 대상자(가유형)가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2개월째 월에 조제분유 추가지원이 결정통보된 경우,
      - ① 2개월(다음 생성일까지 남은 개월수) × 86천원(조제분유 추가지원액) 만큼을 익일부터 추가지급 하고 ② 다음 바우처 생성 시 부터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합산액을 3개월 단위로 지급

## 2)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기

- (유효기간)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조제분유 추가지원(지원유형 변경) 대상자의 조제분유 지원액의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저귀 지원 종료일과 동일
- (소멸시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3) 바우처 구매 가능한 물품 및 방식

- 시중에 구매 가능한(상용화 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 수혜자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2가지 항목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사용 가능
  - \* 예: 기저귀 및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아 월 150천원을 지원받는 경우, 기저귀를 60천원 구매하고 조제분유를 90천원 사용가능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므로 유의해야 함
  - \* 예: 기저귀 바우처 지급금액 1만원이 남은 사람이 3만원의 기저귀를 구매한 경우,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
- 단, 국민행복 전용카드 이용자는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

### 2017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변경 안내문

1. 2017년부터 기저귀 지원은 지원기간이 연장('16년 : 생후 0~12개월 → '17년 : 생후 0~24개월)되어 '15년 출생 영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제분유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변경 전(2016년)	변경 후(2017년)
지원 대상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1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15.1.1~17.12.31 출생) 영아 양육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

※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신청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구비된 신청서류 제출
- '16년 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동 연장)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예시) 영아 출생일이 '15.6.10일, 신청일이 '17.1.2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분 지급  
예외적으로 2015.1월 출생아의 경우, 2017.1.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예시) 영아 출생일이 '16.6.10일, 신청일이 '17.1.2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8개월분 지급

(예시) 영아 출생일이 '17.1.1일, 신청일이 '17.1.2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분 지급  
단, '17년 출생 영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바우처 지급

- (시기) 신청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예정
- ※ 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3. 2017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 수 변동 및 소득의 증가 등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17년 연초에 행복 e-음을 통해 자격여부를 일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서비스 이용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생략)

다. 바우처 이용방법

1) 기본적인 이용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수혜자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

2) 국민행복카드 신청·(재)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발급
  - \* BC 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우리카드),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롯데카드사
- 또는 바우처 지원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시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 신청시 등록한 ‘부모 또는 부모의 신청권자’ 중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결제이용 가능
-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변경 또는 카드훼손·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재발급 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 분실할 경우 재발급 시 까지 이용불가, 분실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차액만 지원

3)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신용불량, 미성년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제도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4)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영하는 곳에 한해 가능

국민행복 카드사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옥션 농협 a마켓	나들가게(전국 250여개)*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삼성카드	-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09:00 ~ 18:00), 토요일(09:00 ~ 13:00)

5) 지원가능한 품목(물품)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이하 동일)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저귀), 축산물 위생관리법(조제분유), 식품위생법(조제식)에 따라 제조·유통 중인 물품
  - \*\* 천기저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우체국 쇼핑몰', '옥션', 'G마켓'에서 구매 가능
- 유통점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Bar-code) 등으로 POS 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유통점별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 품목 및 단가가 서로 다를 수 있음
- 이 지침 외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각 유통점의 원칙을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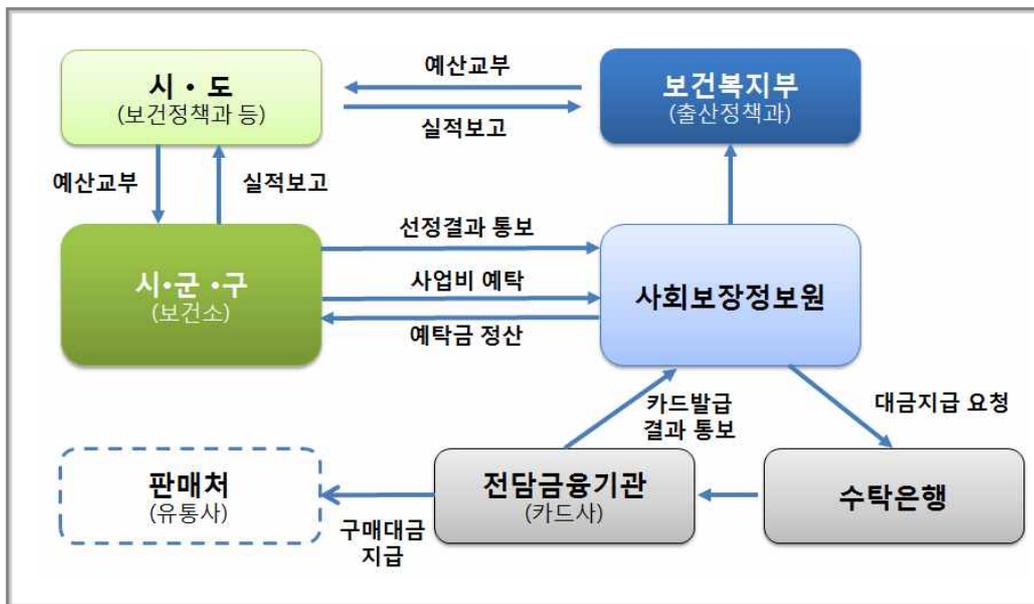
6) 결제수단 및 방식

- 각 유통점별로 운용 중인 결제단말기(POS 내 기능)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품목을 분리하여 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당시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정부지원이 가능

## 4 사업비용 관리 및 정산

## 가. 개요

## 1) 추진 체계(사업예산 흐름도)



## 2) 사업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
- 자금의 출납은 카드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매월 1회)

## 3) 예산의 교부 및 사업비 예탁(豫託)

- 보건복지부,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 시·군·구(보건소)는 바우처 비용 지급을 위해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 예산확정 후 1차분을 즉시 예탁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예탁
- 1차분 예탁 후에는 국비 및 시·도비 교부 시기 및 바우처 비용 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 4) 예탁업무 처리방법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유 통 점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보건복지부	지자체별 예산 배분액 총액 결정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이용내역 관리,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카드사에 서비스 비용 지급, 환수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카드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카드 보급 유통점에 대한 물품비용 지급 ※ 유통점(가맹점)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카드전표 매입 후 3~4영업일 내에 대부분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대금 지급 시점에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 대한 비용지급이 중단됨에 유의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 예탁금 정산내역 및 예탁금 부족 예상 정보를 제공하며, 예탁금이 부족하여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전출입시 이미 지급된 3개월분의 바우처는 전출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잔여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부담

## 5) 비용의 지불 및 정산

- 유통점이 POS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한 내역 중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해당되는 물품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청구(매월 10일경)
-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사 비용 청구에 대해 월 1회(10일 이내) 물품 비용을 지급
  -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하며, 연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연휴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 단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카드사에 비용의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비용 예탁은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요망
  - ※ 예탁금 입금 지연 사례는 국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임을 양지
-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내역과 결제액(카드사 매입기준)을 비교·확인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
  - ※ 월정산 또는 분기정산내역은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구 및 지급 절차
  - ① 기저귀 및 조제분유 물품 구매
  - ② 국민행복카드 결제(POS 결제 단말기 사용)
  - ③ 카드매출전표 출력
  - ④ 해당 카드사(BC카드)로 송신
  - ⑤ 유통점에 비용 지급(매입 후 3~4영업일 이내)
- 전담 금융기관은 결제시점마다 기본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정상인 경우에만 결제

【정 산 절 차】

구 분	주 체	업무 내용
① 계좌개설	복지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예탁금 입금 및 지급계좌 개설 요청</li> <li>※ 보건소 명의 전용 가상계좌 개설(타 사업 예산 입금 금지)</li> <li>• (정보원) 복지부로부터 예탁계좌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탁</li> </ul>
② 입금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및 시·도비 교부 시기 및 바우처 비용 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li> </ul>
③ 대금지급	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 후 유통점에 구매비용 지급(결제일 기준 3~5일내)</li> </ul>
④ 대금청구	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월 지원 대상 물품에 대한 카드이용내역을 당월 10일까지 정보원에 청구</li> </ul>
⑤ 대금정산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된 카드이용내역과 결제액을 시군구(보건소)별로 비교·확인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li> </ul>
⑥ 내역통보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분기말 지급내역(전분기 지출된 총 금액) 시·도에 통보</li> </ul>

-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 시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 사회보장장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연도 종료 시 이용자별 보유 중인 바우처(지원금)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정산은 카드사에서 매입(결제/결제취소)으로 확인한 일자 기준으로 함
  - ※ 결제가 '16.12.31. 발생하였더라도, 카드사 매입이 '17.1.2. 발생하였다면, '17년도 사업비에서 카드사에 지급됨
  - ※ '16.10.10. 발생한 결제건이 '17.2.10.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취소매입은 '17년도 사업비에서 환급되며, 취소건은 '17.2월분 정산서에 반영됨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7.1.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필요서비스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필요서비스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필요서비스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 465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 등급	□ 1급 □ 2급 □ 3급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 <input type="checkbox"/> 갱신신청)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급여 <input type="checkbox"/>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input type="checkbox"/>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취약가구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학교생활 <input type="checkbox"/> 직장생활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일시부재 <input type="checkbox"/>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input type="checkbox"/> 단태아( <input type="checkbox"/> 첫째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input type="checkbox"/>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산모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 가정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산모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input type="checkbox"/> 분만 취약지 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건소 · 주민 센터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b>&lt; 유의 사항 &gt;</b>				확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sup>1)</sup>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제4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비우체)**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b>본인부담금납부계좌</b>		<b>이용권 유효기간</b>		<b>지원내역</b>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원
		추가급여 월 원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원
		추가급여 월 원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 . .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3.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 포함)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지원 결정된 정부지원액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번]

□ 부적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안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input type="checkbox"/> 조제분유 추가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정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다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중지	일 자	<table border="1"> <tr> <th>년</th> <th>월</th> <th>일</th> <th>부</th> <th>터</th> <th>내</th> <th>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년	월	일	부	터	내	용							
	년	월	일	부	터	내	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input type="checkbox"/>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월이상 월차임을 연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상실	일 자	<table border="1"> <tr> <th>년</th> <th>월</th> <th>일</th> <th>부</th> <th>터</th> <th>내</th> <th>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년	월	일	부	터	내	용							
	년	월	일	부	터	내	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input type="checkbox"/> 국적상실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p>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p> <p>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1) <b>기초생활보장</b>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p> <p>2) <b>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b>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3) <b>장애인연금</b>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4) <b>기초연금</b>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p> <p>5) <b>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b>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p> <p>6) <b>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b>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p> <p>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제5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이용 안내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 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 포인트 현황 확인처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4.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BC, 삼성, 롯데)별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구분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나들가게, 이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삼성카드	-	이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

- ※ 삼성카드만 보유한 경우 이마트(오프라인)만, 롯데카드만 보유한 경우 롯데 올마이쇼핑몰만 사용 가능함(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처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며, 확대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5.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발급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는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QnA

**Q**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아가 주민등록 된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서식과 함께 기타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합니다.

**Q** 2. 현재 국민행복카드가 없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사(또는 제휴은행\* 지점), 삼성카드사, 롯데카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BC카드 제휴은행 :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우리카드),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TM)을 통해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Q** 3. IBK기업은행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하나요?

**A** IBK기업은행 등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추가적인 국민행복카드 발급없이 기존 국민행복카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격이 결정된 다음 날부터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4. 정부 지원이 가능한 구매처(유통점)가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지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구매 가능한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별 이용 가능한 유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 국민행복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나들가게 지정점(전국 250여개), 이마트

- (삼성 국민행복카드) 이마트

- (롯데 국민행복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

**Q** 5. 삼성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이마트 등 모든 바우처 유통점에서 결제 가능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삼성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국의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매장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나들가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BC 국민행복카드를, 롯데 올마이쇼핑몰에서는 롯데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 6. IBK기업은행과 우체국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A** BC 국민행복카드면 어떤 카드로든 결제 가능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통해, 기 발급받거나 발급될 예정인 BC 국민행복카드에 자동으로 기저귀·조제분유 기능이 추가됩니다.

**Q** 7. 기저귀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제분유 구매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시에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조제분유 구매 시에는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8.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 대상자입니다.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기저귀에 사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액 전부를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6만4천원과 8만6천원이므로, 합계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9. 엄마와 아빠가 건강 및 직장 등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인 사유로 수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친족이 관계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10. 아직 영아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Q** 11. 영아 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중인 영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실제 양육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대표자), 위탁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영아는 1인 가구로 산정하며, 세대주는 영아 본인이 됩니다.

**Q** 12.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로 천기저귀 구입할 수 있나요?

**A** 천기저귀를 구매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 쇼핑몰', '옥션' 및 G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Q** 13. 아이 월령이 만 24개월을 넘어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60일내 신청시 자격판정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60일 이후 신청시 자격판정일 다음날부터 지원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쿠폰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영아 출생일이 '16.8.10일, 신청일이 '16.12.10일, 자격판정일이 '16.12.15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20개월분이 지급되어 되며,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인 '16.12.16일 부터 20개월 동안('17.8.15일까지) 사용 가능

**Q** 14. 영아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면서 해외체류중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산정방법은?

**A** 영아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면서 해외체류중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Q** 15.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가정폭력시설 입소자인 경우 가구원수 산정 방법

**A**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가정폭력시설 입소자(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시설입소확인증 필요)인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되며, 배우자와의 격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Q** 16. 2촌 이상의 친족이 세대주인 경우

**A**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수에 포함되나, 영아의 2촌 이상의 친족(삼촌, 이모 등)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를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아야 하므로 바우처시스템에 바우처 등급을 수동(사유 : 자동등급계산 결과와 담당자 판단결과 상이)으로 입력 처리하여야 합니다.

**Q** 17.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격판정 방법

**A** 이혼한 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18. 위탁가정 및 시설에 입소한 영아가 지원기간 동안 입양될 경우 바우처 지급은?

**A** 바우처 자격 결정시 지급된 바우처는 입양 당시에 자격중지하여야 하며, 입양 후 입양가정에서 지원대상 신청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Q** 19. 현재 건강보험의 임의계속 가입자는 ‘행복e음’ 상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조회되는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건강보험의 임의계속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복e음 시스템에서는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미비하므로 신청서 입력 시 ‘직장가입자’로 수동입력으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Q** 20. 건강보험료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경우 보험료 산출 방법

**A** 현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을 기초로 산출된 산정(부과)액 기준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경감대상자에 해당하여 경감분이 반영된 고지액은 행복e음 시스템상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Q** 24. 남편이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파견 근로자인 경우 가구원수 및 보험료 산출 방법

**A**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급여중지 상태이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청일 기준 전월 자료)를 확인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가구원수에도 포함합니다.

**Q** 25.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시 신청서 등 구비서류 보관

**A**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복e음 시스템으로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므로 별도의 원본 서류 이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원본 확인 필요시 자율적으로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26. 영아가 '15.11.2일 출생했고, 기존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대상자인데, 2016.12.30.자로 바우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17년부터 지원기간이 24개월까지 확대되어 (기존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영아라도)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6.12.31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4개월까지 연장 처리됩니다.

**Q** 27.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인데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 수 변동 및 소득의 증가 등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등의 지원신청 자격기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7년부터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연1회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관계부서 협의중이며, 별도통보 예정)

**Q** 28. 바우처 포인트가 남아있었는데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A** 지원대상자 결정시 결정통지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기간 및 지원금액(바우처포인트)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의 소멸은 지원대상 영아의 월령(0~24개월) 및 바우처포인트 지급시가 아닌 지원대상자의 기저귀 구매시 예산이 집행되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하게 됩니다.